

원신근린공원(2단계) 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6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방법용 이동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- 원신근린공원(2단계) 내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이동형 CCTV의 위치를 지정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seo.incheon.kr>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3. 6. 28. ~ 2023. 7. 18.(20일 이상)

5. 설치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-7번지 일원

6. 설치장소 사진



7. 의견제출

-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. 7. 18.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32-560-2781)

라. 우 편 : 우)226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299(심곡동, 서구청 공원녹지과)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
(032-560-4492)